

영등포구의회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

2017. 5. 1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08호로 2017년 5월 11일 권영식, 박유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영등포구민이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·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(안 제4조)

나.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

다. 재능기부사업 추진(안 제6조)

라. 재능기부를 참여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22조(조례)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4. 28. ~ 5. 4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·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내용으로는

안 제4조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, 의료, 문화 예술, 전문기술, 사회복지,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정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

안 제6조는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,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며, 재능기부 관련 단체를 발굴하여 육성·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며

안 제7조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에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최근 우리구에는 의료, 법률,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로, 재능기부라는 전문 봉사활동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.
- 2016년 말 기준, 우리구에서는 12개 분야 25개의 재능기부 전문 봉사단이 구성¹⁾되어 재능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중으로,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재능기부가 활성화되어 구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공공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됨.

1) 2016 영등포구 전문봉사단 현황(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)

○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, 법인, 단체 등의 자발적인 재능
기부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
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자치법』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>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■ 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』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